

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세정과)

제출일 : 2026. 3.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 확대(안 제5조의2)
- “조례로 정하는 경감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→ “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”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, 관련 조문과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특히, 안 제5조의2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2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최초 5년간 100분의 50,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정비하려는 것임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